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4 선고 2019가단1009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F

변론 종결2020. 3. 27.

판결 선고2020. 4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

가. 피고 C는 524,943,392원 및 그중 122,977,050원에 대하여

나. 피고 D, E은 소외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연대하여

위 가.항의 돈 중 각 149,983,826원 및 그중 각 35,136,300원에 대하여

각 2009. 1. 13.부터 2009. 2. 4.까지 연 21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망 G, 소외 F(망 G의 처), 피고 C에 대한 이 법원 2009가단16238 구상금 사건에서 2009. 5. 19.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(판결 이유는 별지 "청구원인" 기재와 같다).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,943,392원과 그 중 122,977,050원에 대하여 2009. 1.

13.부터 2009. 2. 4.까지 연 21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나. 망 G은 2017. 6. 21. 사망하였고, 망 G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피고 D은 2018. 6. 29.

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205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고, E은 2018. 9. 12. 같은 법원 2018느단458 사건에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.

다. 원고는 2019. 3. 11. 위 2009가단16238 사건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(소외 F에 대하여는 2020. 3. 30. 소 취하서 제출).

【증거】 피고 C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피고 D, E: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4, 5호증

2. 판단 및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영훈

별지